

#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[제출용]

등기번호	601013	
등록번호	110111-6010138	
상 호	주식회사 대한제5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	· · · · · ·
본 점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(삼성동, 아셈타워)	· · · · · ·
공고방법	일간 머니투데이에 게재하되,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경우 ,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기로 한다.	· · · · · ·
1주의 금액	금 5,000 원	· · · · · ·
발행할 주식의 총수	100,000,000 주	· · · · · ·
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	자본금의 액	변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
발행주식의 총수	100,000 주	· ·
보통주식	100,000 주	금 500,000,000 원 · ·
발행주식의 총수	2,504,665 주	2016.10.19 변경
보통주식	813,332 주	2016.10.19 등기
종류주식	1,691,333 주	금 12,523,325,000 원
발행주식의 총수	2,504,673 주	2016.10.20 변경
보통주식	813,340 주	2016.10.20 등기
종류주식	1,691,333 주	금 12,523,365,000 원
목 적		
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(이하 법이라 한다)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,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	
1. 부동산의 취득, 관리, 개량 및 처분		
2. 부동산개발사업		
3. 부동산의 임대차		
2의2. 주택건설사업	<2016.07.21 추가	2016.07.22 등기>
4. 증권의 매매		
3. 부동산의 임대차	<2016.07.21 변경	2016.07.22 등기>
5. 금융기관에의 예치		
4. 증권의 매매	<2016.07.21 변경	2016.07.22 등기>
6. 지상권,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, 관리, 처분		
5. 금융기관에의 예치	<2016.07.21 변경	2016.07.22 등기>
7.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, 관 리 및 처분		
6. 지상권,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, 관리, 처분		

[인터넷 발급]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의  
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 
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00000210930150017006711101204101B9DABFEBC1F819670917 1 발행일: 2017/07/05

발급확인번호 0130-AARQ-ARDB

- 1/4 -

등기번호	601013	<2016.07.21 변경 2016.07.22 등기>
8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업무		
7.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의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의권의 취득, 관리 및 처분	<2016.07.21 변경 2016.07.22 등기>	
8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업무	<2016.07.21 변경 2016.07.22 등기>	

임원에 관한 사항			
서내이사 정미숙 660803*****	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길 99, 303호(봉천동, 동도빌라)		
서내이사 정미숙 660803*****	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255길 6, 301호(시당동)		
2016년 04월 05일 주소변경	2016년 04월 18일 등기		
2016년 05월 31일 사임	2016년 06월 01일 등기		
감사 서혜정 691005*****			
사내이사 박충구 590319*****			
2016년 05월 31일 취임	2016년 06월 01일 등기		
기타비상무이사 심교언 690510*****			
2016년 05월 31일 취임	2016년 06월 01일 등기		
기타비상무이사 이경환 611210*****			
2016년 05월 31일 취임	2016년 06월 01일 등기		
대표이사 박충구 590319*****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28길 15, 3동 603호(삼성동, 흥실아파트)		
2016년 05월 31일 취임	2016년 06월 01일 등기		

### 종류주식의 내용

#### 종류주식

- ① 회사는 팔천만(80,000,000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이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, 에이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다.
- ② 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먼저 에이종 종류종류주식에 그 발행가액(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함. 이하 같음)의 연 2.00%의 비율로(이하 “우선배당률”이라 한다) 해당 사업연도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하고,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.
- ③ 어느 사업연도의 에이종 종류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에 우선적으로 배당하되, 에이종 종류종류주식에 대한 이러한 누적 미배당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이 다 이루어진 후 남은 이익을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.
- ④ 배당금 산정에 있어서 산정기간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. 단, 어느 사업연도 중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주의 배당금 계산에 있어서의 산정기간은 청약금 납부(해당 사업연도에 신주 발행이 수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납입된 금액별로 기간을 계산함. 이하 본 조에서 같음)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결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.
- ⑤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(이하 “대상부동산”이라 한다)의 매각(일부매각포함)이 포함되어 있는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 배당한다.
  1.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“대상부동산” 중 상가B(분양면적 590.46m<sup>2</sup>로 케이터링 용도 공급예정 상가를 의미함)를 매각하는 경우 그로 인한 매각대금 상당액을 배당한다.
  2.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본 조 제2항에 따른 배당금액과 본 조 제3항에 따른 누적된 미 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.
  3.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한 누적 배당액(본조 제2항, 제3항 및 본항 제2호에 따라 배당된 금

발급확인번호 0130-AARQ-ARDB

00000210930150017006711101204101B9DABFEBC1F819670917 1 발행일:2017/07/05

- 2/4 -

등기번호	601013
------	--------

액 포함, 본항 제1호에 따라 배당된 금액 제외)이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해당 결산기의 말일까지 내부수익률(에이종 종류주주가 납부한 주식인수대금의 현재가치가 배당 등으로 회수되는 모든 금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을 의미함) 연 5.30%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(에이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)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및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을 배당한다.

4. “대상부동산” 중 공동주택 및 상가A(상가A는 분양면적 1,702.64m<sup>2</sup>로 일반용도 공급예정 상가를 의미함, 이하 공동주택 및 상가A를 “대상부동산A” 라 함)의 매각가격이 기준매각가격 이상 상승한 경우 “대상부동산A”를 매각하여 발생하는 처분이익(부동산매각가격에서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부동산매입가격과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, 이하 같음) 중 “대상부동산A”의 매각가격과 기준매각가격의 차액의 30%에 에이종 종류주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(이하 “초과처분이익”이라 함)은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.

\* 기준매각가격 = 공동주택시세 × (1 + r1)의 n/365제곱 + 상가A시세 × (1 + r2)의 n/365제곱

\* 공동주택 및 상가A 시세 : 2016.05.25. 개최된 기금투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완충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승인한 시세

\* r1 : 공동주택의 연간 가격상승률로 1.50%로 함

\* r2 : 상가A의 연간 가격상승률로 0.00%로 함

\* n : “모리츠”의 최초 출자일로부터 “대상부동산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장래의 최초 매각계약체결일까지의 총 일수

5. 본 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.

⑥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.

1. 본 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 중 미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된 금액 상당액을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.

2. 본 조 제5항 3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 중 미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된 금액 상당액을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.

3. 본 조 제5항 4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 중 미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된 금액 상당액을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.

4. 위와 같이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.

2016년 10월 19일 설정 2016년 10월 19일 등기

### 기타사항

#### 1. 주식의 양도

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1.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

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.

1. 주주총회의 해산결의
2. 합병
3. 파산

등기번호	601013
4.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5.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의 취소 6. 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가 거부된 경우 7.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	

회사성립연월일

2016년 03월 23일

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

설립

2016년 03월 23일 등기

수수료 1,000원 영수함 --- 이 하 여 백 ---  
관할등기소 :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/ 발행등기소 :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

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 [다만, 신청이 없는 지점·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]

서기 2017년 07월 05일  
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

전산운영책임관



\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(변경, 경정)된 등기사항입니다. \*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.

[인터넷 발급]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의  
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 
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발급확인번호 0130-AARQ-ARDB

00000210930150017006711101204101B9DABFEBC1F819670917 1 발행일: 2017/07/05

- 4/4 -